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1. 12. 3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1.12.3.(금)>

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
* 단,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
내국인은 시설격리 **5일**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**5일**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
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'PCR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고

◆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,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('21.11.28.~)

-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*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('21.11.28.~)

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(12.3.~)

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(2주간)으로 '모든 국가/지역' 지정('21.12.3.~12.16.)

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

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재안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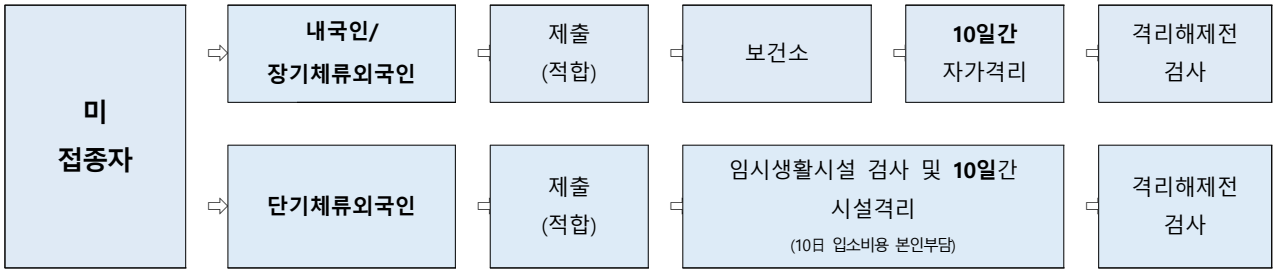
□ 유증상자

구분		진단검사	검사결과		조치사항
유증상자	⇨	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	⇨ 양성	⇨	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			⇨ 음성	⇨	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
□ 무증상자

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구 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국내 예방접종완료자[1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	⇨	미접종자와 동일한 절차 적용		
해외 예방접종완료자[2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	⇨			

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의 경우,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

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구분	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* 發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	5일째 검사, 격리해제전 검사
그 외 아프리카 국가 發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	단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 (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	격리해제전 검사

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

○ 격리면제서 소지자 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구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검사
격리면제서 제출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 (보건소)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등 '격리면제서'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(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'음성'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)

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구 분	입국시	접종 이력 등록	증명서 발급 (보건소)	등록 후	재입국시
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⇨ 격리면제 *자가진단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⇨ 예방접종확인서	⇨ 격리면제 유지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(한국 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⇨ 예방접종확인서	⇨ 격리 유지 (입국후 10일간 격리)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(외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접종이력 등록 불가	⇨ -	⇨ -	격리대상 *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
국내1회+국외 1회 내·외국인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*등록 즉시 격리면제	⇨ 예방접종증명서	⇨ 격리면제 전환 *자가격리앱 삭제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(예방접종증명서)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(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)

<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안내>

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,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주요내용】

○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(오미크론)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'12.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/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안내드립니다.

※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,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

*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: 모든 국가/지역**

【적용기간】

○ '21. 12. 3.(0시) ~ 21. 12. 16.(24시) 입국자

【참고사항】

○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**

출처 : http://ncov.mohw.go.kr/duBoardList.do?brdId=2&brdGubun=23&seq=5705&#=5705